결재	날자
법제실장	
제일국장	
총무과장	
주무자	
기안자	

시행 발 4293.4.25 송

제 四九三 호

년 월 일접수 일기안

법제 제

편찬 류별

정서 관련번호

대조

기장 류

검인 종보존별

발송

종

수신인

제一안 공보실장

제二안 국방부장관

제三안 수산국무위원

발신인

國務院 公布에 關한 件 稟議

법제실장

공고 제 호 건명 계엄종류변경의 건

단기四二九三년 四월 二五일 대통령께서 재가하신 국무원공고제 八七 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 절차를 밟고저 재결을 바라나이다

(제一안)

0457

202

수제의건 부 송부하오니 다음과같이 공포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一、공포건명 계엄종료에관한건

二、공포종별번호 국무원공고제 八七 호

三、공포날자 단기四二九三년 四월二十五 일

(제二안)

수제의건 다음과같이 공포되었음으로 통지하나이다

기

(제一안「기」와같음)

(제三안)

수제의건 다음과같이 공포되였아오니 민의원의장에게 통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제一안「기」와같음)

2030458

完結 / 未完結

決裁 年 月 日

施行 年 月 日

(記號) 法制 第 [illegible] 號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五日 起案

檀紀 年 月 日 接受

編纂類別

關聯番號

淨書

照對

帳記

印鈐

發送

保存種類別

種

大統領

法制室長

國務院事務局長 (經由)

第一局長

法制官

總務課長

書記官

主務者

起案者

件名 戒嚴種類變更의 件 公告의 件

檀紀四二九三年四月二十五日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標記의 件을 다음과 같이 公告함이 可하오리까

0459

204

(公告案)

國務院公告第(十七)號

戒嚴種類變更의 件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戒嚴種類變更의 件을 다음과 같이 公告한다

大統領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二十五日

國務總理內務部長官 홍진기

國務總理財務部長官 송인상

國務총리 國防部長官 김정렬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최재유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신현확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김영찬

國務委員 建設部長官 손창환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김학원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박의병

訓令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二十五日 國務院公告第八十六號로 公告된 다음 地域의 警備에 關한 檀紀四千二百九十三年四月二十六日上午五時로부터

非常戒嚴으로 變更함

地域

서울特別市

(第二案)

國事總第 號

檀紀四二九三年四月 二十三 日

大統領 李承晩

民議院議長 李起鵬 閣下

非常戒嚴宣布通告의 件

檀紀四二九三年四月十九日字로通告한標記의 件에 關하여 國務院公告第八十五號로써 第八十六號로 各各警備戒嚴으로 變更하였으나 이와 같은 秩序가 다시 攪亂되므로 因하여 國務會議의

0463 208

議決을거쳐 釜山市에 警備戒嚴을檀紀四二九三年四月二十六日上午五時로부터 戒嚴으로 變更하였사오니 이에 通告하나이다

계 엄 사 령 부

계사령 제 30 호 4293.4.25

수신 국 방 부 장 관

제목 계엄 종류 변경 상신

1. 국무원 공고 제 86 호 (4293.4.25) 로 변경된 서울특별시에 대한 계엄의 종류를 4293.4.26 . 05.00부로 비상계엄으로 변경 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끝.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 요 찬

0465